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저작권 문화

2017. 12. vol.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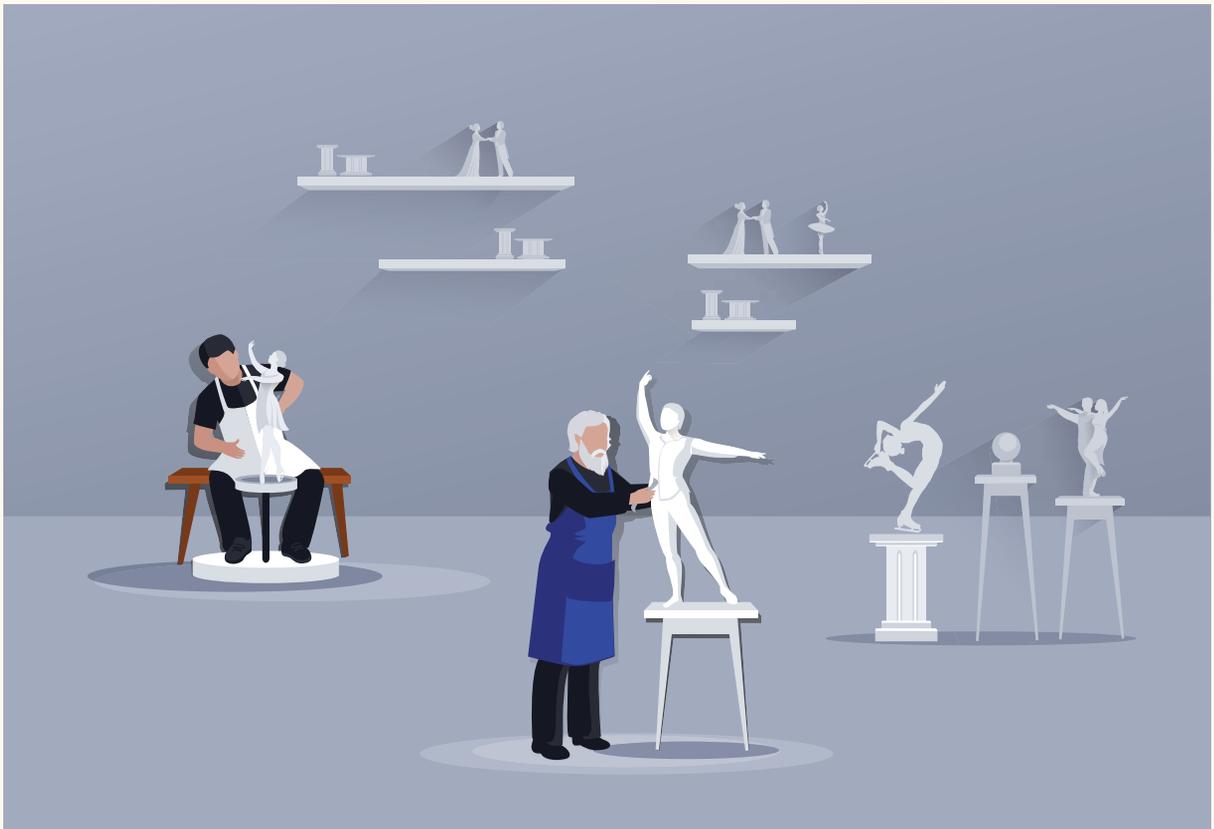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기획특집
②문화올림픽 속 공공
저작물(공공미술)

공공미술과 저작권

공공미술은 저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배경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는 한다. 저작권을 가진 작가는 작품을 창작한 의도대로 작품이 전시, 보존 및 관리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를 소유한 주체가 작품을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전시하거나 변형할 경우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등 세심한 저작권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미술의 목적 및 공공성 규정

갤러리나 미술관의 실내에 전시되어 선택된 소수만이 관람할 수 있는 미술품과 달리 공공미술은 처음부터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되는 작품을 전제로 한다. 공공미술은 갤러리 등 제한된 공간에 놓여있던 미술을 일반 대중의 공간으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공공미술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 도시이며, 조각, 벽화, 스트리트 퍼니처, 포장작업,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공공미술의 기원은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주로 미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또는 도시미화라는 정책적 목표 하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기에 미술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미술가를 위한 공공사업’(Public Works for Artists)으로 시작되었다.

공공미술은 그 공공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설치 또는 전시 장소가 공공적 공간이라는 요소, 그 작품의 목표나 이슈가 공공적 관심 대상이라는 요소,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공공미술의 개념적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장소에서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 외에 새로운 장르로서의 공공미술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을 지향하고, 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공공미술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분리

공공미술로서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미술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다소 까다로운 쟁점을 낳고 있다. 우선 공공미술 작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주문을 받아 창작되어 인도되고 공공장소에 설치된 경우, 저작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저작권은 작가에게 남아 있게 된다. 조각 등 유체물로서의 작품에 대한 물건 소유권은 주문자인 국

가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귀속되지만, 그 유체물에 화체된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전시한 미술작품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운영할 경우는 이는 해당 공공미술품 작가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물론 개방된 공공장소에 항시 전시한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은 누구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개최 장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 조각상을 관광객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복제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저작권법 제35조). 우리 저작권법에는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복제한 이후 인터넷에 전송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스웨덴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참고할 만하다. 즉, 스웨덴 시각저작권협회가 공공미술품을 찍은 사진을 작가의 동의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한 위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¹⁾이다. 이 사건에서 스웨덴 법원은 공공미술품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무료로 제한 없이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작가 동의 없이 작품을 변형할 수 있는가?

한편, 공공미술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중에는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많은 이들의 논쟁을 낳고 있다. 공공미술 작품의 소유권이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 해당 작품을 변형하거나 설치 장소를 옮기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해당 작품을 조각, 폐기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 작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많은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일례^①로 움직이는 조각인 모빌의 창시자 알렉산더 콜더는 ‘피츠버그’라는 제목의 흑백으로 되는 모빌작품을 1958년 엘리게니 카운티에 기증하였고, 이 작품은 피츠버그 공항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이후 공항 직원이 흑백으로 되는 모빌 판을 녹색과 금색(해당 카운티의 상징색)으로 페인트칠을 하는 한편, 모빌의 방향을 재배치하고 고정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다. 당시 미국에는 저작권권의 개념을 알지 못하였고, 콜더는 강력하게 이를 항의하였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미국에서도 시각미술품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권권이 인정되는 법(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이 제정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공공미술의 저작권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 발생하였다. 이를 테면 시카고 공원에 소위 ‘생명 미술’(Living art)이라는 장르의 꽃정원 작품(Wildflower Works)을 둘러싼 분쟁이다. 작가는 시카고 공원 당국의 허락을 받아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축구장 2배 크기의 공원에 수천 개의 꽃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꽃정원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공원 당국은 위 꽃정원 부지 일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로 하고 화가에게 꽃정원 규모 등을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화가는 꽃정원을 변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화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원 당국은 꽃정원 조성 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꽃정원 공간의 절반을 잘라내어 그 공간의 꽃을 옮겨 심어버렸다. 작가는 심한 모독감에 못 이겨 소송을 냈는데 주된 청구원인은 자신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꽃정원은 저작된 것이 아니라 식재되고 경작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정 매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세간에서는 작가 동의 없이 공공미술 작품을 변형할 수 있는지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도라산역에 설치된 벽화를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떼어낸 후 소각하여 폐기하자 작가가 저작권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미술품 소유권자의 처분의 자유의 범위, 저작권권이 저작물의 폐기에 대해서도 미치는가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낳았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다. 법원은 벽화를 폐기한 것은 소유권자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작가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이 충돌할 때 소유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가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창작자가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공공미술은 그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작품의 선정과 관리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전혀 무지한 관리자에 의해 작품이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일회성 이벤트로 설치하고 이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관리를 통해 사회 대중이 감상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공공미술 작품의 철거나 재배치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가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Paul O'Mahony, Wikimedia 'breaks copyright' with Swedish statue photos, The Local, 2016. 4. 4.

② Leonard D. DuBoff, Art Law, 2004, 180쪽.